

# 2014년 제4차 성장사다리펀드[재기지원 2차 펀드]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14년 제4차 성장사다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정 개요

항목	세부내용
위탁운용 금 액	○ 성장사다리펀드 : 700억원 이내
선 정 운용사수	○ 2개사 이내 - 운용사별로 350억원 범위내에서 제안 * 출자요청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투자기구	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전문회사 등 * 본 건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 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,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
운용사 신청자격	○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
운 용 사 선정방법	○ 홈페이지*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성장사다리펀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성장사다리펀드 : <a href="http://www.glfkorea.or.kr">www.glfkorea.or.kr</a> 산은자산운용 : <a href="http://www.kdbasset.co.kr">www.kdbasset.co.kr</a>
접수일시	2014년 12월 24일(수) 09:00 ~ 16:00
최종 선정일	2015년 1월 하순
펀드(조합) 결성시한	○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단,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

## 2.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

□ 투자대상은 법인 형태의 중소·중견기업(대기업은 제외)으로, 투자기간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

□ 주목적 투자대상

구 분	주목적 투자대상											
기업의 재기지원	○ 아래 ① ~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											
	① 중소기업에 40%이상 투자											
	②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*에 약정총액의 50% 이상 투자											
	*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 : 회생절차기업, 워크아웃기업(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, 중소기업 “Fast-Track 프로그램” 공동운영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,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)											
	③ 위 ②의 기업 중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개선 등 재기지원 목적으로 60% 이상 투자(※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이에 준하는 형태를 재기지원 목적 투자로 인정)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투자 방법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재기지원 목적의 투자 유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DIP Financing</td> <td>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</td> </tr> <tr> <td>② 회생회사 보유 자산 매입</td> <td>자산 매각을 요건으로 회생계획 인가받은 회사의 자산 매각(Sale &amp; Lease Back 또는 회생회사에 우선매수권, call option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)에 투자</td> </tr> <tr> <td>③ 조기할인변제</td> <td>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1~2회 정상 변제시 채권단 합의하에 회생종결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</td> </tr> <tr> <td>④ M&amp;A</td> <td>회생절차 개시(또는 인가)된 기업이 인수·합병을 통하여 정상화 시도하는 경우</td> </tr> <tr> <td>⑤ NPL</td> <td>회생절차기업의 채권자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①, ②, ③, ④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추가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투자 방법	재기지원 목적의 투자 유형	① DIP Financing	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	② 회생회사 보유 자산 매입	자산 매각을 요건으로 회생계획 인가받은 회사의 자산 매각(Sale & Lease Back 또는 회생회사에 우선매수권, call option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)에 투자	③ 조기할인변제	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1~2회 정상 변제시 채권단 합의하에 회생종결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	④ M&A	회생절차 개시(또는 인가)된 기업이 인수·합병을 통하여 정상화 시도하는 경우	⑤ NPL
투자 방법	재기지원 목적의 투자 유형											
① DIP Financing	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											
② 회생회사 보유 자산 매입	자산 매각을 요건으로 회생계획 인가받은 회사의 자산 매각(Sale & Lease Back 또는 회생회사에 우선매수권, call option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)에 투자											
③ 조기할인변제	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1~2회 정상 변제시 채권단 합의하에 회생종결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											
④ M&A	회생절차 개시(또는 인가)된 기업이 인수·합병을 통하여 정상화 시도하는 경우											
⑤ NPL	회생절차기업의 채권자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①, ②, ③, ④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추가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											
※ 담보처분 또는 NPL재매각 등 기업의 재기지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순 NPL투자 등은 투자범위로 인정하되, 재기지원 목적에서 제외												

### 3. 주요 출자조건

항목	내용
최소 결성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00억원</li> <li>※ 최소결성금액의 조정</li> <li>- 펀드규모가 최소 결성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, 성장사다리 출자금액 및 펀드 최소 결성금액을 각각 75%까지 하향 조정 가능</li> <li>- 조정된 최소 결성금액 이상의 펀드결성이 어려울 경우, 선정취소</li> </ul>
출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장사다리펀드 : 약정총액의 50% 이내</li> <li>- 후순위 출자금액 : 약정총액의 25%와 250억원 중 작은 금액</li> </ul>
운용사 최소 출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정총액의 1.5%이상</li> <li>- 운용사 출자금액*은 최소 ① <u>성장사다리펀드와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출자</u> 하여야 함.</li> <li>- ①에 따라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금액이 ② <u>약정총액의 5%</u>를 초과하는 경우 ②를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금액으로 할 수 있음</li> <li>* 펀드 최소 결성금액의 하향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전 최소 결성금액 기준을 적용</li> </ul>
존속기간	○ 8년 이내 (2년 이내 연장 가능)
투자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
관리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기간 : 미투자잔액의 연 1.1%이하+투자잔액의 연 1.6%이하</li> <li>○ 투자기간 이후 : 투자잔액의 연 1.4%이하</li> <li>※ 잔액은 분기말평잔으로 계산</li> </ul>
성과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준수익률(IRR 7.0%) 상회시 초과이익의 20% 이내 지급</li> <li>- 펀드수익률이 5.0%를 초과시 성장사다리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 (5.0%를 초과하는 이익) 중 20%를 운용사에 지급</li> <li>○ 창업자 재기지원 및 재기지원목적 투자와 관련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수익의 일부를 업무집행사(조합)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가능한 구조로 제안</li> <li>※ <b>창업자 재기지원</b> : 기업의 재기 지원과 함께 기업을 계속 경영 및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실패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운용사가 제안하여 실행하는 경우, 펀드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</li> </ul>
이익배분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익률별 이익배분 구조(계단식)</li> <li>- 기준수익률 이하 :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배분</li> <li>- 기준수익률 초과 :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선순위 출자자에 비해 추가로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로 제안</li> </ul>

손실분담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(조합)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, 후순위 출자자 - 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분담</li> <li>(i) 후순위 출자금액 한도내에서 지분율에 따라 우선 손실 분담</li> <li>(ii) 손실금액이 후순위 출자금액을 초과할 경우, 선순위 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손실 분담</li> <li>※ 구체적인 손실분담 구조는 운용사가 제안</li> </ul>
납입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시납 또는 분할납</li> </ul>
출자자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</li> <li>- 단, 운용사의 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 책임운용 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출자자 허용하며, 이외 개인출자자의 경우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의하여 결정</li> </ul>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장사다리펀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, 펀드자산 관리</li> <li>○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</li> <li>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</li> </ul>
회계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장사다리펀드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</li> </ul>
ER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ERP시스템 사용 의무</li> <li>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성장사다리펀드가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</li> <li>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</li> </ul>
핵심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</li> <li>○ 자격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심운용인력 :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,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</li> <li>-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핵심운용인력 중 2인(5년 이상의 경력자 1인 이상 포함)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%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</li> <li>○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(또는 정관)에 기재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보수, 성과보수, 기준수익률 등은 출자조건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</li> <li>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성장사다리펀드와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</li> </ul>

## 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### 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  -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### 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성장사다리펀드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 5. 제재 사항 및 기타

### □ 제재 사항

- 결성 시한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
-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### 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## 6. 선정절차 및 일정

### □ 선정 절차

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1차 심사(서류) → 현장실사 → 2차 심사(구술) → 최종선정

### □ 선정 일정

일자	내용	비고
2014. 12. 24 (수)	제안서 접수	(접수시간) 09:00 ~ 16:00
2015. 1월 하순	최종 선정결과 발표	개별통보

\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□ 1차 심사(서류) 평가기준

구분	평가 항목	주요 평가 내용
정량평가	경영안정성	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
	운용인력 역량	투자경력, 투자수익률, 핵심운용인력 유지율 등
	운용사 역량	펀드운용 경험 및 규모, 펀드수익률 등
	기타	펀드결성 가능성, 펀드규모 적정성
정성평가	경영안정성, 재가지원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, 투자자산 가치증대 방안, 참여인력 역량, 참여인력 관리, 의사결정, 리스크관리, 내부통제, 펀드 결성 조건 등	

## 7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### □ 지원방법

- 성장사다리펀드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
  - ※ 『제출서류 및 관련양식』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
(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- 2차 심사(구술)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8부)를 제출
  - 분량 :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파워포인트 파일 별도 지참)

□ 접수일시 : 2014년 12월 24일(수) 09:00 ~ 16:00

□ 출자 설명회

○ 일시 : 2014년 12월 9일(화) 15:00

○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2(여의도동 16)  
한국정책금융공사 8층 강당

## 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처 :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 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정책금융공사 2층)

□ 문의방법 :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(02-6922-6744)  
E-mail : sw.lee@ibk.co.kr

산은자산운용 정책펀드팀 (02-3774-8041)  
E-mail : ecjeong@kdbasset.co.kr

2014년 12월 5일

성장사다리펀드 (운용사)산은자산운용